

전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나11145(본소), 2022나11152(반소) 판결 [지체상금 청구의
소 · 매매대금]

재판경과

전주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2나11145(본소), 2022나11152(반소) 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9. 29 선고 2020가단53697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항소인

농업회사법인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의중

피고(반소원고), 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미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이진

피고, 피항소인 2.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보

변론종결 2023. 12. 21.

판결선고 2024. 1. 25.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2. 9. 29. 선고 2020가단53697(본소),

2020가단59114(반소) 판결

주 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청구취지]

본소: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B는 51,220,000원, 피고 C는 42,992,400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B에게 26,000,000원과 그 중 4,000,000원에 대하여는 2019. 5. 10.부터, 22,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2. 17.부터 각 이 사건 반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주식회사 B의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본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 및 쌍방의 주장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 제3쪽 아래에서 제4행의 “C의”를 “피고 C의”로 고쳐 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정재규, 판사 구나영, 판사 정유성